



Asian Domain Name Dispute Resolution Centre

결 정 문

사건번호: KR-1700169

신 청 인: 삼성전자 주식회사(대리인 특허법인 태평양)

피신청인: 임상운(Lim Sang Woon)

1. 당사자 및 분쟁 도메인이름

신 청 인: 삼성전자 주식회사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삼성로 129 (매탄동)

대리인: 특허법인 태평양(변리사 김정현, 장홍석)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343 신덕빌딩 11층

피신청인: 임상운(Lim Sang Woon)

서울특별시

분쟁 도메인이름은 “samsungai.com”이며, 피신청인에 의해 (주)가비아(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660, B동 4층)에 등록되어 있다.

2. 절차의 경과

신청인은 2017. 9. 27. 아시아도메인이름분쟁조정센터(ADNDRC) 서울사무소(이하 ‘센터’ 라고 함)에 분쟁 도메인이름의 이전을 구하는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2017. 10. 11. 센터는 등록기관에게 등록인의 정보를 요청하는 전자우편을 발송하였고, 등록기관은 2017. 10. 11. 센터에 등록인의 확인 등 세부사항을 확인해주었다.

2017. 10. 18. 센터는 분쟁해결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전자우편을 통하여 피신청인에게 발송하면서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는 마감 기일이 2017. 11. 7.임을 통지하였다. 또한 같은 날 등기우편을 통하여 절차개시 통지 및 신청서 등 서류를 전자우편으로 발송하였음을 통지하였다.

2017. 11. 7. 피신청인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2017. 11. 15. 센터는 보충규칙에 따라 이덕재 위원을 행정패널로 선임요청 하였고, 같은 날 행정패널로서의 승낙 및 중립성과 독립성의 선언을 확인 받아 2017. 11. 16. 행정패널을 구성하였다.

3. 사실관계

신청인은 전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삼성그룹의 핵심계열사이다. 삼성그룹은 1938년 3월 삼성상회(三星商會)라는 명칭으로 대구에서 처음 사업을 시작하다가 1951년 1월 삼성물산(株)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신청인은 1969년 1월 13일 삼성전자공업(株) 라는 상호로 설립되었다고 1984년 2월 현재의 상호로 변경하였다.

‘SAMSUNG’(이하, ‘이 사건 표장’)은 삼성그룹 계열사들의 상호의 핵심요부일 뿐만 아니라 수 많은 계열사들이 취급하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출처표지로서 전세계에서 오랫동안 널리 사용해 온 결과 세계적으로 유명한 브랜드가 되었다.

신청인은 이 사건 표장을 전세계 대부분의 국가에서 상표등록을 하여 상표권을 보유하고 있다.

피신청인은 분쟁 도메인이름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있다.

4. 당사자들의 주장

A. 신청인

신청인의 주장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이 사건 표장은 삼성그룹 계열사들의 상호의 핵심요부일 뿐만 아니라 계열사들이 취급하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출처표지로서

전세계에서 오랫동안 널리 사용해 온 결과 세계적으로 유명한 브랜드가 되었다.

신청인은 이 사건 표장을 전세계 대부분의 국가에서 상표등록을 하여 상표권을 보유하고 있다.

WIPO의 도메인네임분쟁조정사건에서도 이 사건 표장이 전세계적으로 저명한 상표인 점 및 신청인이 이 사건 표장에 대한 정당한 권리자임을 인정한 사례가 다수 있으며, 이 사건 표장에 다른 문자를 결합한 `samsunghelthcare.com`, `samsungfinance.com`, `samsungplus.com`, `samsungschool.com`, `samsungbp.com`, `samsungventure.com`, `samsungsds.com`, `samsunggear.com`, `samsungoil.com`, `samsungvr.com`, `samsungdex.com`, `samsung.cam` 등의 도메인이름의 등록을 말소하거나 신청인에게 이전할 것을 결정한 사례가 다수 있다.

분쟁 도메인이름의 'samsungai'는 이 사건 표장 'SAMSUNG'과 유사하다.

B. 피신청인

피신청인은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5. 검토 및 판단

규정 제4조 (a)항에 따르면 신청인은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요건을 모두 입증해야 한다.

(i) 신청인이 권리를 갖고 있는 상표 또는 서비스표와 등록인의 도메인이름이 동일하거나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하다는 것,

(ii) 등록인이 그 도메인이름의 등록에 대한 권리 또는 정당한 이익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다는 것, 그리고

(iii) 등록인의 도메인이름이 부정한 목적으로 등록 및 사용되고 있다는 것.

따라서 상기의 사항과 관련하여 당사자가 주장하는 논점을 판단하면 다음과 같다.

A. 상표·서비스표와 본 건 분쟁 도메인이름의 유사

분쟁 도메인이름에서 “.com”을 제외한 “samsungai”는 이 사건 표장 “SAMSUNG”에, 영어에서 “인공지능”을 뜻하는 “Artificial Intelligence”의 약어로 널리 알려져 있어 그 자체로서 출처 표시력이 매우 약한 “AI”를 결합한 것임을 쉽게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도메인이름은 이 사건 표장과 출처의 혼동우려가 있어 유사하다고 판단한다

B. 피신청인의 권리 또는 정당한 이익

피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삼성그룹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신청인의 주장에 대해서 답변을 하지 않았다. 그리고 피신청인이 "SAMSUNG" 또는 "samsungai"에 대하여 권리 또는 정당한 이익을 가지고 있다고 볼만 한 어떠한 주장이나 증거도 없다. 따라서 피신청인이 이 사건 도메인이름을 등록 또는 보유할 권리 또는 정당한 이익은 없다고 판단한다.

C. 피신청인의 부정한 목적

이 사건에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분쟁 도메인이름의 등록 이전에 이 사건 표장은 삼성그룹의 명칭으로, 삼성그룹계열사들의 상호로, 그리고 삼성그룹계열사들이 취급하는 상품과 서비스의 상표로서 전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저명상표임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도메인이름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나 정당한 이익을 가지고 있지 않은 피신청인이 이 사건 표장과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한 이 사건 도메인이름을 이 사건 표장에 대하여 모르고 우연히 등록 받았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피신청인은 이 사건 표장의 명성에 편승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는 등의 부정한 목적으로 이 사건 도메인이름을 보유하고 있음이 인정된다.

6. 결정

위와 같이 검토한 결과, 본 행정패널은 ‘규정’ 제4조 (a)항
및 ‘절차규칙’ 제15조에 의하여, 신청인의 신청에 따라 분쟁
도메인이름인 < samsungai.com >을 이전할 것을 결정한다.

1인 행정패널

이덕재

결정일: 2017년 11월 30일